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01. 5. 2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조성함 (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위원회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
- 수당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2002 당초예산
- 관계부처 승인 : 필요없음
- 입법예고 : 필요없음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수입금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5.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기획실장, 환경복지과장,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기타 여성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으로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으로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명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법률제5934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잠정적 우대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등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